

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

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 등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.

○ 시·도지사는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

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 신설됨에 따라,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